
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의약품 도매상이 질병관리청장의 관리하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. 다만, 질병관리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유통품질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약품 개봉 판매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6조(의약품의 개봉 판매) ①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의약품 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6조(의약품의 개봉 판매) ① 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의약품도매상이 질병관리청 장의 관리하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. 다만, 질병관리청장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유통품질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